

대전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2268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대영, 황윤상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의 피고에 대한 2021. 1. 16.자 900만 원, 2021. 1. 18.자 100만 원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의 2021. 4. 23.자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31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원고는 2021. 1. 16.자 900만 원, 2021. 1. 18.자 각 금전지급행위를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인 변제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전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금전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13.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7054호로 “① B은 원고에게 213,381,654원과 그중 213,381,023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5. 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B과 C 사이의 2018. 4.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C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B과 D 사이의 2018. 9.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D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로 B이 주유소로 운영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4억 1,111만 원에 경락받아 2021. 4. 23.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제시외 건물도 함께 경락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다. 변론 종결일 무렵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1억 6,000만 원 가량이 남아 있는데 무자력 상태이고, F생인 피고는 B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 5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공주시장의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B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딸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1993년생인 피고는 아무런 자력이 없다. 경락대금 4억 1,111만 원 중 1억 6,311만 원(=4억 1,111만 원 - 피고 명의 G조합으로 대출금 2억 4,800만 원)은 B이 H 등 친인척으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1,03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B은 피고에게 2021. 1. 16.자로 900만 원, 같은 달 18.자로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딸인 피고와의 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6, 7, 8, 9, 10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G조합, I단체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피고는 2021. 1. 22. 주민등록지를 공주시 J건물, K호로 변경하였다가 2021. 7. 5.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별지 목록 순번 2, 5 기재와 같이 87.66㎡규모의 단층주택과 36㎡ 규모의 사무소가

있고, 제시외 건물로 18㎡ 규모의 캐노피, 30㎡ 규모의 차양시설, 18㎡ 규모의 창고도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 명의의 I단체 보통예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I단체계좌'라고 한다)는 피고가 만 18세가 되기 전인 2011. 6. 16. 개설된 사실, I단체계좌에 B 명의의 현금거래는 물론 B의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C에게 2021. 3. 30. 300만 원이 지급되고, 피고와 거래관계가 없어 보이는 L(M)가 2021. 8. 31. 500만 원, 같은 해 10. 29. 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N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160만 원 가량의 연소득(월 평균 180만 원)이 있었고, G조합 대출금 합계 2억 4,800만 원(=담보대출 2억 1,800만 원 + 신용대출 3,000만 원)의 상환원리금이 월 120만 원 가량에 이른 사실, G조합이 대출실행시 작성한 여신심의회심사록에 '채무자(피고) 소득 금액이 다소 적으나 타금융기관 채무가 전혀 없고, 담보물은 주유소로서 향후 영업을 하여 수익을 실현한다면 상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I단체계좌에 숙부 H로부터 2021. 1. 25.자 8,000만 원, 2021. 4. 22.자 1,900만 원, 사촌 O로부터 2021. 4. 19.자 2,000만 원, 지인 P로부터 2021. 4. 21.자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900만 원이 각 입금되고, 피고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G조합계좌'라고 한다)로 2021. 4. 22.자로 고모 Q로부터 3,000만 원, R로부터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입금되고, 잔금납부일인 2021. 4. 23. G조합으로부터 합계 2억 4,800만 원의 대출금이 각 입금된 사실, G조합계좌에서 2021. 4. 23. B의 채권자인 C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B이 실질적으로 I단체계좌나 G조합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거래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B이 H 등 친인척으로부터 1억 6,900만 원을 빌려 그 중 청구취지 기재 1억 6,311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참조).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피고의 I단체계좌로 2021. 1. 16. 900만 원, 2021. 1. 18.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B의 금전지급행위가 변제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채무자인 B의 딸로서 B의 자력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채무변제가 있었던 2021. 1.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던 점, 피고의 계좌에서 B에게 2015. 4. 28. 40만 원, 2015. 6. 21. 40만 원, 2016. 8. 20. 120만 원, 2016. 9. 21. 100만 원, 2017. 2. 22. 80만 원, 2017. 3. 18. 200만 원, 2018. 2. 15. 100만 원, 2018. 2. 16. 100만 원, 2018. 2. 17. 100만 원, 2018. 2. 17. 50만 원, 2018. 3. 31. 100만 원 등 합계 1,03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의 나이, 소득 정도, 시간적 간격(2018. 2. 15.부터 17. 사이 4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이 송금되었다)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B이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에 대한 채권합계는 1,030만 원으로 변제기나 이율 등을 정한 흔적이 전혀 없고, B이 송금한 금액은 그에 못미치는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는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은 딸인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2021. 1. 16.자 900만 원 + 2021. 1. 18.자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문춘언

별지

목 록

1. 공주시 S 대 440㎡

2. 공주시 S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 87.66㎡

3. 공주시 T 주유소용지 285㎡

4. 공주시 U 대 260㎡

5. 공주시 T, U

1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무소 36㎡. 끝.

